별표 5

관리하수급인 지정

구 분		내 용	
유 형		I 등급	Ⅱ등급
지정 대상	① 부실시공		·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진홍법 상 2점 미만의 부실 벌점이 부과된 경우 ·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해당 하수급인의 귀책사유 로 수급인에게 경고장이 발급된 경우 ·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지급자재업체(전문공사업 종)로 참여하여 경고장이 발급된 경우
	② 공사포기	·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	·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 사업추진에 지 장을 초래한 경우 예) 수급인과의 다툼 또는 설계변경불가 등으로 공사 포기한 경우 등
	③ 불법 하도급	· 과징금 이상 부과 · 적발건수 3회이상/착공이후	· 과대료 이상 부과 · 적발건수 2회/착공이후
	④ 공사대금(노임, 자재·장비 등) 체불	 5백만원/회 이상의 체불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1회 체불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5회 이상의 상습체불인 경우 체불민원이 60일 이상 미해결된 경우 	· 5백만원/회 이상의 체불이 2회 발생한 경우 · 1회 체불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·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3회 이상의 상습체불인 경우
	⑤ 하수급인의 과실 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	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- 사망자 1명 이상 발생	·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이외의 안전사고 2회 발생한 경우
	⑥ 기타사항	·LH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	· 입주자 사전점검 및 하자보수의 미흡으로 입주자 10인이상의 다수민원을 유발한 경우 등 · IH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응한 경우
	하도급 심사	- 2년간 하도급 심사 (98점 미만 계약내용 변경 요구)	- 1년간 하도급 심사 (95점 미만 계약내용 변경 요구)
지정 방법	① "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" 또는 "품질관리심의위원회"를 구성하여 지정여부 및 등급 판단 ② 산재사고, 공사대금(노임, 자재·장비 등) 체불 후 도주,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민원인 등의 명확한 증거제시 가 있는 등 관련자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위원회의 개최 없이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 가능		
지정후 조치	① 관리하수급인 지정 후 '관리하수급인 제재내용'양식에 의거 본사에 통보 ②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시 관리하수급인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③ 지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열람이 가능하게 조치 ④ 시공평가 시 하도급계약의 적정도 부문 감점조치		